

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8 - 5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8. 1. .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어린이놀이기구 행위의 제한 사항 중 애완동물의 출입을 일체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 장애인 보조건을 동반한 장애인의 입장까지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 보조건을 동반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제4조(행위의 제한) 제1호 흡연, 음주, 가무, 방뇨행위 및 애완동물 동반 출입행위 사항에 장애인 보조건 예외사항을 추가
 - 애완동물에 '장애인 보조건을 제외' 명시
- 나.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 등 정비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4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 : 2017. 10. 26. ~ 2017. 11. 15. (의견제출 없음)

나.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: 원안 동의

다.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라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17.12.28.)

마.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 1부

바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단서 중 “시설에 대하여는”을 “시설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그 밖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3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.

제4조제1호 중 “애완동물”을 “애완동물(장애인 보조견은 제외)”로 한다.

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.

제8조 중 “제7조의 시설 담당부서”를 “제7조에 따른 소관부서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기관에 대하여”를 “기관에게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관리계획 수립)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다만,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 감독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<u>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</u></p> <p>6. <u>그 밖의 법에 의한 안전관리 규정 준수</u>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4조(행위의 제한)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실시하고,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</p>	<p>제3조(관리계획 수립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시설은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그 밖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</u> <u><삭 제>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행위의 제한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여야 한다.

1. 흡연, 음주, 가무, 방뇨행위
및 애완동물 동반 출입행위

2. ~ 5. (생략)

제7조(업무의 분담)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관련 업무부서에서 담당하게 한다.

1.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

2. 「도로법」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

3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

4. 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

5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

6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

-----.

1. -----
- 애완동물(장애인 보조견은 제외) --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업무의 분담)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.

- 7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
- 8. 「의료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
- 9. 「주택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
- 10. 그 밖에 담당업무 부서 지정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」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.

제8조(관리 감독) 제7조의 시설 담당부서에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·관리하도록 관리·감독하여야 한다.

제11조(표창 등)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.

제8조(관리 감독) 제7조에 따른 소관부서-----

-----.

제11조(표창 등) -----

기관에게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--.